

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

구분	사할린동포 []	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배우자) []
	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) []	동반가족 (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 []
대상자	성명	생년월일
	성별	국적
선정결과	[] 선정	[] 미선정
		※ 사유:

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재 외 동 포

청 장

직인

유의사항

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미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가.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등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해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나. 미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명단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다. 미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3항·제4항에 따라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